#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89

발의연월일: 2021. 1. 19.

발 의 자:이양수・박성중・서범수

김은혜 • 추경호 • 권영세

홍문표 • 조수진 • 정희용

조해진 · 김성원 · 윤창현

(12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(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 기간·구역 및 수심), 별표2(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)를 준용하고 있으며, 시·도의 조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낚시제한기준을 강화하는 시·도의 조례는 지역 사정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임,

또한 같은 시·도 내에서도 시·군·구별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및 낚시 여건 등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 사정에 맞게 낚시제한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시·도의 조례로만 강화할 수 있도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.

이에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, 별표2에 정하여지지 않은 기준 항목(수산동물의 종류·마릿수·체장·체중 등과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·도구 및 시기 등)의 추가를 포함하고,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시·도에서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로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).

법률 제 호

##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"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"를 "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"로, "시·도의"를 "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의"로, "낚시제한기준을"을 "낚시제한기준(기준 항목의 추가를 포함한다)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"을 "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 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안 제5조(낚시제한기준의 설정) ① · 제5조(낚시제한기준의 설정) ① ·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③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 ---도・특별자치도(이하 "시・ 시・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는 관할 수역 도"라 한다) 또는 시・군・구 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(자치구를 말한다)-----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·도의 조례로 ----시·도 또는 시· 군·자<u>치구의</u>-----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 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-----낚시제한기준(기준 항목의 추가를 포함한다)을 --정할 수 있다. 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 자치시장・도지사 또는 특별자 -----도지사·특별자치도 지사(이하<u>"시·도지사"라</u>한 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다)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 한다)는 제3항에 따라 낚시제한 기준이 설정 · 변경된 경우에는 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낚시인이 알 수 있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